

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2. 11. 11 규칙 제323호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424호(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)
일부개정 2012. 10. 19 규칙 제69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로 한다)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지원대상) 용인시여성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. <개정 2012. 10. 19>

1.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
2.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·연구소
3.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

제3조(지원신청 및 결정 등) 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2. 법인·단체의 현황 및 정관
3.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(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)
4.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여성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. <개정 2012. 10. 19>

1.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
2.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
3.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

4.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

5. 최근 1년간 여성관련 추진실적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 및 교부)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월 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신청인과 지원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지원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계획 변경)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사업내용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정산 및 반납)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지원 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19>

제7조(지도감독)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19>

제8조(장부의 비치) ①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19>

1. 기금관리대장(별지 제4호서식)

2. 기금교부대장(별지 제5호서식)

3. 현금출납부(별지 제6호서식)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24호,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12. 10. 19 규칙 제69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]

1. 사업계획

가. 사업명

나. 목적

다. 내용

라.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

(단위 : 원)

내역	소요금액	산출근거	지원신청액

마. 소요예산 조달방법

(단위 : 원)

구분	금액	비고
계		
여성발전기금		
자체운용자금		
회원모금		
복지가후원금		
기타		

바. 정부보조금(국·도비여성발전기금)수원실적

(단위 : 원)

사업명	사업기간	수원(원조)금액	보조금 구분	비고

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

2.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

가. 단체의 구성현황

임원수					회원(단원)수		
회장	부회장	이사	기타	계	정회원	준회원	기타

나. 활동실적

기타	활동내역	비고

다.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

등록(허가, 신고)번호	등록(허가, 신고)일자	등록(허가, 신고)내용	등록기관명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2. 10. 19>

기 금 교 부 신 청 서

지원사업자명				
	전화번호			
	휴대전화			
지원사업분야				
사 업 명				
사 업 기 간				
사 업 장 소				
교부신청금액	금 원 (₩)			
교부신청 내역	총 사 업 비	기금교부신청액	자체부담금	기 타
산 출 내 역				
사업추진내용	세부사업추진계획서 따로 붙임			
<p>「용인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신청단체] 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대 표 자]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: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계좌번호] (은행)</p>				
용 인 시 장 귀하				
[붙임서류]	1. 세부사업추진계획서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3. 기금통장 사본 4. 사업추진약정서			

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3호서식]

기 금 정 산 서

1. 사 업 명
2. 사업비집행현황

(단위: 원)

내역	예산액	지출액	잔액	비고
계				
여성발전기금				
자체 부담금				
기타				

- 붙임 : 1.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
2. 사업비 집행내역 1부
3.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
4. 행사 유인물 및 사진 등 각1부
5. 기타 증빙자료 각1부

「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
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단 체 명 :
대 표 자 : (인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]

1. 지원사업 추진실적

사 업 개 요	
추 진 실 적	
효 과	
문제점 및 건의	

2. 지원금 집행내역

(단위 : 원)

집 행 내 역	집 행 액	비 고
계		

《비 고》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
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4호서식]

기 금 관 리 대 장

(단위 : 원)

연월일	적 요					수 입	지 출	잔 액	비 고
	예금종류	은행명	통장번호	이 율	기 간				

[별지 제5호서식]

기 금 교 부 대 장

(단위 : 원)

연월일	적 요	채 주	수 입	지 출	잔 액	비 고

[별지 제6호서식]

현 금 출 납 부

(단위 : 원)

연월일	적 요	수 입	지 출	잔 액			
					담당자	담 당	과장